#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50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오세희·박수현·오기형

박희승 • 정진욱 • 김우영

민형배 · 김태선 · 문금주

정태호 · 김성환 · 이상식

김원이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대·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·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면제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·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이제공되고 있음.

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은행은 2023년 기준, 이자이익 59.2조원 및 당기순이익 21.3조원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는데,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대출금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상생금융지수를 산 정·공표하도록 하고,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 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, 기본계획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0호의2, 제4조및 제20조의6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2. "금융회사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.
  - 가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 - 나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
  - 다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 협은행
  - 라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
  - 마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
  - 바. 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10의2. "상생금융지수"란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및 중소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

제20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동반성장지수"를 "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"로, "기업"을 "기업·금융회사"로 한다.

3.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6(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) 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 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<u>2</u> 의2. "금융회사"란 다음 각 목
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	<u>를 말한다.</u>
	가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	나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
	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
	<u>앙회</u>
	다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
	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
	<u>앙회 및 농협은행</u>
	라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
	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
	중앙회 및 수협은행
	마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
	금고와 그 중앙회
	바. 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행
	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기관
3. ~ 10. (생 략)	3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10의2. "상생금융지수"란 중소</u>

11. ~ 13. (생략)

제4조(대・중소기업 상생협력 추 제4조(대・중소기업 상생협력 추 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~ 6. (생 략) <신 설>

7. · 8. (생략)

③ · ④ (생 략)

치 등) ① (생 략)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2. (생략)

<신 설>

3. (생략)

- ③ (생략)
- ④ 위원회는 <u>동반성장지수</u>의

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반성 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및 중 소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 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 다.

11. ~ 13. (현행과 같음)

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 과 같음)

(2)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 6의2.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 력에 관한 사항
- 7. · 8. (현행과 같음)
-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동반성장위원회의 설 제20조의2(동반성장위원회의 설 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 표에 관한 사항
-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-----동반성장지수 및

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및 <u>기업</u>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 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.

⑤ ·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u> 상생금융지수</u>
<u>기업·금융</u>
회사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세20조의6(상생금융 우수금융회
사 지원) 정부는 중소기업과
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
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
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
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